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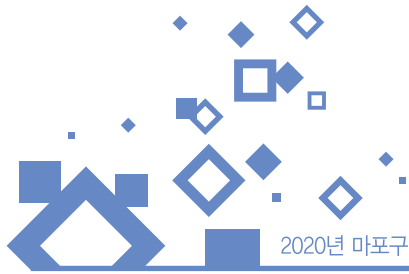
2020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 고 서



2020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 고 서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포구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여 2021년 현재 2기 3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구민의 권리보호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구민에 대한 행정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택, 건축, 교통 등 다수 발생한 민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청취를 통해 옴부즈만에 대한 필요성과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대면활동의 제한으로 행정의 변화와 민원발생 감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활동으로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민원인들이나 관련자들과의 대면기회는 감소하였지만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인과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고충이 처리되는 과정을 볼 때, 절차를 이행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옴부즈만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구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 설 것입니다.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의 귀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에서 수행한 활동내역과 성과를 담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옴부즈만의 민원처리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민원처리에 동참해주신 부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I. **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연혁	8
2. 옴부즈만 소개	12
3. 옴부즈만 기능	13
4. 옴부즈만 운영방법	15

II. **2020년 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 · 반복민원 운영 성과	26
2. 고충 · 반복민원 처리 내역	28
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운영 성과	34
4.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내역	35
5.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39

III. **2020년 옴부즈만 운영 사례**

1. 고충 · 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42
2. 부서자문 주요 사례	48
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주요 사례	57
4. 기타 활동 사례	67

IV. **참고 자료**

1. 보도자료	70
2.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1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3



1.

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연혁
2. 옴부즈만 소개
3. 옴부즈만 기능
4. 옴부즈만 운영방법

I.

옴부즈만 운영개요

01 도입배경 및 연혁

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옴부즈만(Ombudsman)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채택된 이래 주로 북유럽에서 발전해 온 제도로,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마포구에서는 구민의 눈으로 구정을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을 구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마포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014

- 04. 2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0. 16.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1. 03. 옴부즈만 공개모집
- 11. 14.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2. 16. 옴부즈만 사무실 설치
- 12. 19. 제192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2015

- 01. 01. 제1기 마포구 옴부즈만 3인 위촉
- 01. 09. 제1차 옴부즈만 정례회의 개최
- 10. 06. 서대문구 옴부즈만과 간담회 개최
- 10. 14.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

2016

- 02. 29. 옴부즈만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
- 03. 07.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03. 07.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
- 08. 05.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
- 10. 13.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
- 10. 21. 안양시 주관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
- 12. 01. 마포구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2017

- 03. 03.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유공 표창
- 03. 06.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03. 06. 2017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3. 07.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
- 04. 19. 2017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5. 18.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 참석
- 09. 27. 2017년 제3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1. 30.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
- 12. 13. 서울 서북 지역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2. 22.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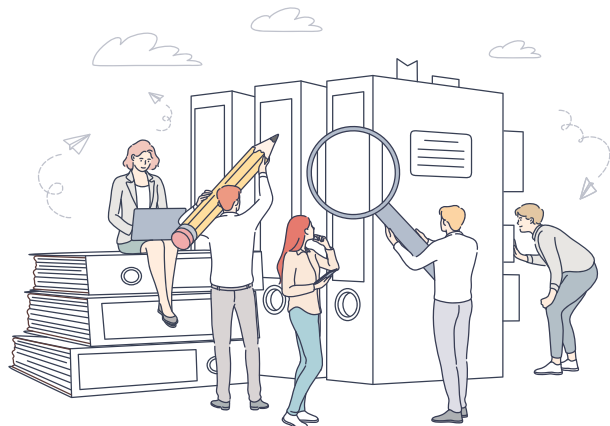
- 03. 02.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 참석
- 03. 02. 2017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개최
- 03. 05. 2017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04. 27. 2018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7. 13. 강원도 도민감사역량강화과정 출강(이수복 대표옴부즈만)
- 08. 06. 경북 상주시,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 벤치마킹 방문
- 09. 12. 2018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0. 1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 10. 31. 서울 서북권(마포 · 서대문 · 은평)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 11. 06. 옴부즈만 공개모집
- 11. 13.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1. 28. 전국지방옴부즈만협의회 총회 참석
- 11. 30. 제226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
- 12. 26. 2018년 제3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2. 31. 2018년 마포구 모범구민 구청장 표창 수상

2019

- 01. 16. 2019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2. 13. 구의장단 간담회
- 04. 17.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협의회 총회 참석
- 06. 12. 서울 서북3구(마포 · 서대문 · 은평)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 07. 25. 2019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9. 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포구 옴부즈만 벤치마킹 방문
- 09. 17. 정부합동민원센터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 09. 25. 서울 서북3구(마포 · 서대문 · 은평)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0.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고충민원 처리 실태평가심사위원 참여
- 10. 18. 마포구 전 · 현직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10. 31.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참석
- 11. 26. 광주광역시 북구청,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 벤치마킹 방문

2020

- 01. 21. 2020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02. 27.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옴부즈만 표창
- 11. 05.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마포구 옴부즈만 벤치마킹 방문
- 11. 11. 2020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참석
- 11. 2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 벤치마킹 방문
- 12. 10. 제2기 마포구 옴부즈만 재위촉



02 옴부즈만 소개

가. 구성개요

- 지 위 :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 임 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 방식 : 공개모집에 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운영 방식 : 전원합의제
- 구성 현황

성 명	주요 경력
박 영 철	· 前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 前 도화 · 용강상권활성화 단장, 용강 · 대흥동장 등
길 기 현	· 現 주)SLK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現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배 수 진	· 現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나. 자격 요건 (조례 제3조 제3항)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03 옴부즈만 기능

가. 직무 (조례 제4조, 제5조)

직무관할	직 무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 (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 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 · 평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나. 주요기능



다. 주요 권한

1) 고충민원의 조사 (조례 제14조)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다.
-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6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7조)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례 제19조)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청렴계약 감시·평가 (조례 제21조)

-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한다.

6)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조례 제22조)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04 옴부즈만 운영방법

가. 고충민원 접수 및 조사 (조례 제12조 ~ 제19조)

1) 고충민원 신청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방문, 인터넷 게시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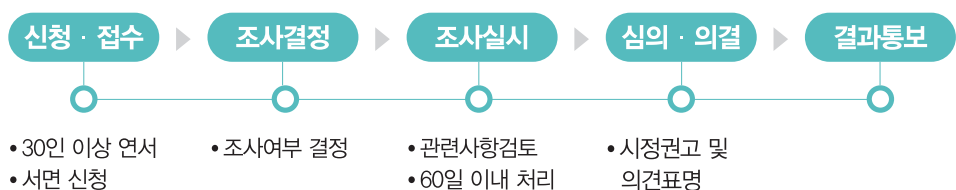
- 정례회의에서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담당 옴부즈만을 지정하고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조사 실시를 통보한다.(단순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첩)

3) 민원조사 실시

-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에서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관련 부서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 고충민원의 반려 등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조례 제21조 ~ 제23조)

1) 운영계획 수립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옴부즈만은 제출 목록을 바탕으로 매년 활동범위를 정하여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감시·평가 실시

-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3) 감시·평가 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관련 부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 감시·평가 주요 검토 사항

- 사업추진의 타당성,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요건의 적정성
-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 여부
- 설계의 적합성(도면 부실 여부 등), 설계변경 여부 및 필요성
- 추진의 적정성(이유 없는 공사 지연 여부 등)
- 시공품질 점검 및 설계도면과 시공현장 비교

다. 정례회의

1) 추진방향

- 대표 옴부즈만 주재 하에 고충민원의 원인과 내용, 양측의 주장과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갈등 해소와 조정 및 중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2) 운영개요

- 운영주기 : 주 1회 개최(필요 시 수시 회의)
- 참석대상 : 옴부즈만, 민원인, 관계부서 등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 여부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 고충민원 조사결과 공유, 논의 등 처리방향을 전원합의제로 의결
 - 주요 반복민원 검토, 구정 주요 현안 공유
 - 청렴계약 감시·평가 점검 및 검토
 - 관련 부서 및 민원인 의견 청취, 현장 조사 등



3) 정례회의 운영현황 (2020년 총 48회 개최)

구 분	주요안건	주요내용
제1차 정례회의 (2020. 1. 8.)	• ○○동 주차장 문제 민원 • ○○동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피해 민원	• 신청인, 피신청인 양 당사자 면담 •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제2차 정례회의 (2020. 1. 9.)	• ○○동 주차장 문제 민원 • 문화예술과 부서 자문	• 담당공무원 면담 및 해결방안 논의 • 총액확정된 행사용역 완료 후 사후정산 관련 민원
제3차 정례회의 (2020. 1. 15.)	• 문화예술과 부서 자문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 면담
제4차 정례회의 (2020. 1. 21.)	• 문화예술과 부서 자문 • ○○동 주차장 문제 민원	• 의결서 작성 및 최종 검토 • 담당공무원 및 피신청인 면담, 옴부즈만 의견 제시
제5차 정례회의 (2020. 1. 28.)	2019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논의	고충 · 반복 민원,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주요사례 선정
제6차 정례회의 (2020. 2. 6.)	• ○○동 주차장 문제 민원 • 2019년 옴부즈만 운영 방향 논의	• 담당공무원 면담 및 의결서 작성 • 고충민원 조사 · 처리 내실화 등
제7차 정례회의 (2020. 2. 11.)	• 2019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초안 검토 • 2020년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운영 계획 검토	• 보고서 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삭제 • 대상 사업 월별, 단계별 균형 배분 및 연도 내 평가 완료
제8차 정례회의 (2020. 2. 13.)	• 2020년 반복 · 고질민원 조정 및 중재 계획 검토 • 2019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최종 검토	• 2020년 반복 · 고질민원 조정 및 중재 계획 검토 · 확정 • 2019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최종 검토 · 확정
제9차 정례회의 (2020. 2. 19.)	○○동 경계 담장 붕괴 위험 등 2019년 주요 민원	민원 처리 현장 점검
제10차 정례회의 (2020. 2. 27.)	• 청렴계약 감시 · 평가(2019년 보도블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합정동 부서 자문	•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의견 표명 • 동청사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 자문

구 분	주요안건	주요내용
제11차 정례회의 (2020. 3. 5.)	○○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민원	도로과, 교통행정과, 생활체육과 담당 공무원 면담 및 현장 조사
제12차 정례회의 (2020. 3. 11.)	○○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민원	도로과, 생활체육과 담당 공무원 및 민원인 면담을 통한 입장 확인
제13차 정례회의 (2020. 3. 18.)	○○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민원 - 주택과, 건축과 부서 자문 - 건설관리과 부서 자문	- 도로과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 면담 - 도로 일부 ○○구역 대지 편입에 따른 자문 - 타인의 도로점용 허가 취소 요청 -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유예 관련 민원
제14차 정례회의 (2020. 3. 25.)	- 건설관리과 부서 자문 ○○동 신축공사 피해 민원	- 주차장 진출입로 원상복구 관련 관계 부서법령 검토 필요 - 건축과에 옴부즈만 의견 제시
제15차 정례회의 (2020. 4. 3.)	건설관리과 부서 자문	국유지 무단 점유물 철거 요청 민원
제16차 정례회의 (2020. 4. 8.)	건설관리과 부서 자문	국유지 무단 점유 철거 요청 관련 민원인, 건설관리과 · 건축과 담당 공무원 면담
제17차 정례회의 (2020. 4. 21.)	국유지 무단 점유 철거 요청 민원	건설관리과, 건축과 담당공무원 및 피민원인 면담
제18차 정례회의 (2020. 4. 29.)	- 건설관리과 부서 자문 - 위생과 부서 자문 ○○동 공영주차장 건립 민원	- 민원인, 피민원인 면담(국유지 무단 점유물 철거 합의)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업체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 도로과 담당공무원 면담(민원인 요구 일부 수용 · 협의 진행)
제19차 정례회의 (2020. 5. 6.)	○○동 공영주차장 건립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관내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관내 하천 생태복원사업, 성미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 최종 검토 및 의결서 작성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구 분	주요안건	주요내용
제20차 정례회의 (2020. 5. 12.)	◆◆아파트 경계 확정 및 부출입구 확보 요청 ○○동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2020년 포장도로 · 보도블럭 유지보수 공사, 월드컵북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 주택과 담당공무원 면담 - 현장확인 및 도로과 담당 공무원, 민원인 면담 - 국유지 무단점유물 철거 관련 건설관리과, 주택과 담당공무원 면담
제21차 정례회의 (2020. 5. 19.)	○○동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골목길 재생 환경개선 공사)	- 도로과 담당 공무원 면담 - 청렴계약 의견 표명
제22차 정례회의 (2020. 5. 28.)	○○동 일대 환경개선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홍대골목형 퍼레이드, 마포관광 가이드북 제작)	- 민원인 면담 - 청렴계약 의견 표명
제23차 정례회의 (2020. 6. 4.)	○○동 일대 환경개선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골목길재생지역 리모델링 계획 수립 용역, 걷고싶은거리 지하공간 개발 수요예측 및 민자적격성 검증 용역)	-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담당공무원 면담 - 청렴계약 의견 표명
제24차 정례회의 (2020. 6. 10.)	○○동 일대 환경개선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마포아트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공사, 어린이집 LED조명 시설 공사)	- 현장조사 및 민원인 면담 - 청렴계약 의견 표명
제25차 정례회의 (2020. 6. 16.)	○○동 일대 환경개선 민원	민원인 면담
제26차 정례회의 (2020. 6. 23.)	청렴계약 감시평가(전산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제27차 정례회의 (2020. 6. 30.)	○○동 일대 환경개선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고압시설 교체, 자동개폐장치 설치) - 노인장애인과 부서자문 - 교통지도과 부서자문	- 옴부즈만 최종 의결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 경로당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 - 민사소송 당사자 적격 자문

구 분	주요안건	주요내용
제28차 정례회의 (2020. 7. 9.)	• 청렴계약 감시평가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실행 계획 수립 용역) • 건축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부서자문 • 부동산정보과 부서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장 허가 처리 •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신축 관련 민원
제29차 정례회의 (2020. 7. 17.)	• 청렴계약 감시평가 (마포구립도서관 정보화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도서 운반용역) • 위생과 부서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 아파트 상가 내 배달식당 19개 입점 반대
제30차 정례회의 (2020. 7. 23.)	아파트 상가 내 배달식당 19개 입점 반대	현장확인 및 담당공무원, 민원인, 피민원인 면담
제31차 정례회의 (2020. 7. 29.)	• 위생과 부서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매)	• 아파트 상가 내 배달식당 19개 입점 반대 관련 위생과, 주택과 담당공무원 면담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제32차 정례회의 (2020. 8. 7.)	• 청렴계약 감시평가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 탐사) • 위생과 부서 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 옴부즈만 최종 의결
제33차 정례회의 (2020. 8. 13.)	• 청렴계약 감시평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건설관리과 부서 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감면 소급적용 요청 민원
제34차 정례회의 (2020. 8. 18.)	청렴계약 감시평가 (마포유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신촌지역 재개발계획 재정비)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제35차 정례회의 (2020. 9. 16.)	• 청렴계약 감시평가(가로등 개량공사) • 위생과 부서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 아파트 내 배달식당 관련 옴부즈만 의견 이행실태 점검

구 분	주요안건	주요내용
제36차 정례회의 (2020. 9. 22.)	• ○○동 폐가 철거 요청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마포구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영역, 네트워크 스위치 및 장비 구입)	• 도시안전과 담당공무원 면담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제37차 정례회의 (2020. 9. 28.)	• ○○동 폐가 철거 요청 민원 • 청렴계약 감시평가(CCTV 유지보수, 관제 영역)	• 건축과, 도시안전과 담당공무원 면담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제38차 정례회의 (2020. 10. 7.)	○○동 폐가 철거 요청 민원	건축과, 도시안전과 담당공무원 면담
제39차 정례회의 (2020. 10. 15.)	○○동 폐가 철거 요청 민원	민원인에게 검토내용 안내 및 민원인 의견 확인
제40차 정례회의 (2020. 10. 21.)	○○동 폐가 철거 요청 민원	도시안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담당공무원 및 민원인 면담
제41차 정례회의 (2020. 10. 27.)	• ○○동 폐가 철거 요청 민원 • 오피스텔관리단과 상가 입주자간 벌과금 부과 • 교통지도과 부서 자문	• 옴부즈만 최종 의결 • 민원인 면담(상가 입주자) • 상가 건물 부설주차장 관련 자문
제42차 정례회의 (2020. 11. 5.)	오피스텔관리단과 상가 입주자간 벌과금 부과 관련 민원	건축과 담당공무원, 민원인 면담
제43차 정례회의 (2020. 11. 11.)	청렴계약 감시평가(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제44차 정례회의 (2020. 11. 18.)	건설과리와 부서자문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소급 민원
제45차 정례회의 (2020. 12. 9.)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면담
제46차 정례회의 (2020. 12. 16.)	○○길 통행불편 민원	건축과, 재무과 담당공무원 면담
제47차 정례회의 (2020. 12. 22.)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면담

구 분	주요안건	주요내용
제48차 정례회의 (2020. 12. 29.)	• 건축과 부서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지하주차장 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용역, 지하공간 개발 전문기관 검토평가 용역,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 건축물 해체신고 관련 자문 • 청렴계약 감시평가 의견 표명

라. 현장조사

1) 추진방향

-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사업의 현장방문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2) 추진현황



○○동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조사



○○동 국유지 무단점유 현장조사



○○동 일대 환경개선 민원 현장조사



○○동 빈 집 현장조사



II.

2020년 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 · 반복민원 운영 성과
2. 고충 · 반복민원 처리 내역
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운영 성과
4.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내역
5.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성과

II. 2020년 옴부즈만 운영 성과

01 고충 · 반복민원 운영 성과

가. 총 평

-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으며 구민이 체감하는 고충이 더욱 크게 다가온 한 해였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구민이 느끼는 어떠한 고통도 크게 듣고 구민과 이해당사자 간, 구민과 행정 간의 완충역할을 하며 상호 이해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 2020년 고충민원 접수 건수는 총 142건으로, 그 중 교통건설(30%)과 주택건축(20%)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은 여전히 구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고,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보행안전과 주차차 문제까지 더하여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사소음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었다.
- 해가 지났어도 전염병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어, 구민의 고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다년간 민원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더욱 공감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1) 민원 접수 · 처리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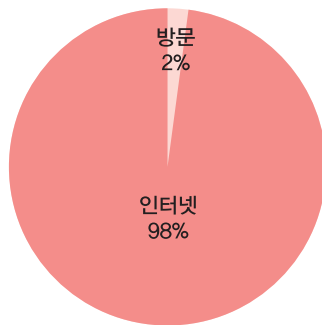
계	민원 구분		조사 여부	
	신청민원	반복민원	직접조사	협의처리
142	136	6	8	134

2) 민원 접수 방법 및 처리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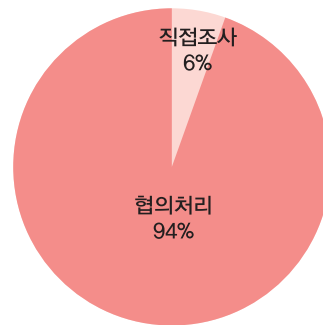
(단위: 건, 일)

접수 방법(건)			처리 기간(일)		
계	방문	인터넷	평균	최대	최소
142	2	140	8	69	1

민원처리 현황



민원접수 현황



3)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건)

계	주택 건축	도시 환경	교통 건설	복지 보건	일반 행정	산업 경제	청소 행정
142	29	24	42	17	19	7	4

4) 조사민원 처리 결과 현황

(단위:건)

계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불인용	심의 종결
8	-	-	8	-	-	-

나. 민원관련 법률 자문 및 공공시설 관련 기술 자문 현황

(단위:건)

계	구분	소계	일반 행정	복지 보건	도시 환경	주택 건축	기타
45	법률	15	8	2	1	1	3
	기술	30	3	4	2	4	17

02 고충 · 반복민원 처리 내역

가. 민원 처리 현황

연번	민원명	조치유형
1	◆◆빌라 입주인 주차장 문제 해결 요청	의견표명
2	2019 ○○행사 용역대금 분쟁	의견표명
3	○○동 공영주차장 건립 및 도로확장 사업 중 불공정 행정에 대한 사실규명 및 원상회복 청구 민원	의견표명
4	국유지 무단점유 사항 철거 요청	의견표명
5	○○동 ▲▲▲-▲번지 보안등 설치 관련 민원	의견표명
6	○○동 일대 생활안정을 위한 민원	의견표명
7	아파트 상가 내 배달식당 19개 입점 반대	의견표명
8	○○동 무허가건축물 정비 요청	의견표명

나. 기타 민원 검토 현황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	앞집 공사로 인한 천장 누수 피해	건축과
2	녹색건축인증 관련	세무1과
3	○○역2번출구 관광버스 불법주차 단속 요망	교통지도과
4	○○○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청	도로과
5	버스킹 예약 시스템 과부화로 인한 예약 불균형	관광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6	편의점과 카페 불법 테이블 및 소음 관련	환경과, 건축과, 건강증진과
7	인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교통지도과,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8	재건축공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 촉구	주택과, 환경과
9	공사 소음 관련	환경과
10	마을버스 정류장 무정차 신고	교통지도과
11	○○구역 주민 교통 관련	관광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12	대흥로○길 ○ 나무손질 요청	공원녹지과
13	관급공사업체의 횡포 관련 민원	주택과
14	○○○역 출구 추가 요청	도로과
15	○○○아파트 주변 주민편의시설 유치 관련	노인장애인과
16	주차민원	교통지도과
17	마을버스 정류장 CCTV 미작동 신고	교통행정과
18	육아 돌보미 문의	여성가족과
19	공사소음 신고	환경과
20	마포중앙도서관 내 마포영어교육센터 관련 문의	마포중앙도서관
21	마포중앙도서관 영어교육센터 관련 문의	마포중앙도서관
22	주정차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교통지도과
23	마을버스 횡단보도 신호위반 신고	교통지도과
24	강변북로 방음벽기초 벽화 관련	서울시설공단
25	협동조합 관련 민원	일자리지원과
26	민원처리 완료 요청	건축과
27	생활쓰레기 무단투입 근절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공덕동
28	○○시장 내 소음 피해	지역경제과
29	무단투기 폐기물 쓰레기 처리 요청	공덕동
30	도로에 있는 의자로 불편사항 신고	위생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31	화장실 손소독제 혹은 비누 관련 사항	주택과
32	사생활 보호 요청	건축과
33	신호등 설치 요청	교통행정과
34	주택가에서의 상점 소음 민원 신청	환경과
35	통행불편 신고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36	건물 불법 개조 신고	위생과, 건설관리과
37	통신사 대리점의 횡포 신고	감사담당관
38	○○로 하수구 악취 신고	치수과
39	소음/환경개선 관련 문의	위생과
40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관련 민원 문의	지역경제과
41	건물 앞 흡연 불편으로 인한 금연구역 신청	건강증진과
42	월드컵파크○단지 교차로 정체 경적 소음 신고	감사담당관
43	상수동 ○○○-○ 공사문제	건축과
44	불법경작지 조성 신고	공원녹지과
45	가게 앞 하수구 문제	치수과
46	바퀴벌레 방역 관련	보건행정과
47	마포구 성지○길 무단 음식물 쓰레기 투척 신고	합정동
48	공동주택 층간소음 신고	주택과
49	망원1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외부관리 요청	교통지도과
50	구립마포중앙도서관 예약 서비스 관련	마포중앙도서관
51	무단침범 신고	건축과
52	무단침범 공사 진행 신고	건축과
53	골목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요청	도화동
54	건물 화장실 손소독제 혹은 비누 비치 사항 문의	주택과
55	초등학교 등굣길 개선 요청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56	건축 허가 관련 문의	건축과
57	바퀴벌레 소독 요청	보건행정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58	주택 앞 청소년 흡연, 절도, 노상방뇨 등 각종 비행 신고	마포경찰서
59	통행에 불편한 킥보드 처리 요청	건설관리과
60	영화촬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 신고	관광과
61	주정차 과태료 50% 감면 요청	교통지도과
62	배수관 철판 소음 신고	치수과
63	고깃집 연기 냄새 피해	위생과
64	벚나무 해충 방제 요청	공원녹지과
65	주차 민원	교통행정과
66	무분별한 건축허가 시정 요구	건축과
67	도로 배수구 덮개 소음 신고	치수과
68	과태료 감면 요청	교통지도과
69	개 배설물 불법투기 신고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70	안전지대 화물차 주차, 상하차 작업 및 지게차 역주행 신고	교통지도과
71	우편물주소지 변경 요청	감사담당관
72	맨홀주변 정리 요청	치수과
73	동네 바퀴벌레 방역 요청	보건행정과
74	집 앞 주차 문의	교통지도과
75	집 앞 주차 문의	교통지도과
76	집 앞 주차 문의	교통지도과
77	상가 앞 불법점유물 철거 요청	건설관리과, 주택과
78	도로 노후계단 바닥 복구요청	도로과, 염리동
79	유기동물 담당자의 직무 유기 고발	지역경제과
80	상가 환풍기 노출 건으로 보행 불편 및 유해물질 우려	주택과
81	소음 신고	환경과
82	아파트 상가 환풍기 노출로 주민 불편 증가 신고	주택과
83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요청	망원1동
84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환불 요청	건설관리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85	교통지도과 담당자 관련 민원	교통지도과
86	도로 불법 점유 신고	교통지도과
87	주택가 대형 실외기 진동 소음	환경과
88	마포아트센터 도서관 이용 관련	문화예술과
89	가로수 방역 작업 요청	공원녹지과
90	합정역 비둘기 모이 주는 사람 처벌 요청	공원녹지과
91	합정역 ◎◎◎, ◇◇◇ 앞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 처벌 요청	공원녹지과
92	합정동 ○○○-○ 무단투기 단속 요청	합정동
93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의	세무1과
94	신축공사 2차 피해 민원	건축과
95	마포 아트센터 건너 마포구립염리도서관 신축 공사 소음 민원	건축과
96	마포구립 염리도서관 공사 소음	건축과
97	○○동 주점 및 노래방 등 영업중지 관련 문의	위생과, 문화예술과
98	영업장 소음	지역경제과
99	코로나19 관련 커피숍 영업 신고	위생과
100	불법주차 차량 신고	교통지도과
101	공사 소음, 먼지 신고	건축과, 환경과
102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교통행정과
103	친절 공무원 칭찬	민원여권과
104	소음 신고	건설관리과
105	아파트 매입 관련 실거주 문의	주택과
106	편의점 소음	건축과
107	빈집 흉물 방치된 ○○동 ▲▲▲번지 철거 요청	도시안전과
108	○○동 신축건물로 인한 사생활 피해 호소	건축과
109	코로나 사태 법규 미준수 업소 고발	위생과
110	앞집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차량 주차 분쟁	건축과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11	옆 건물 나무 침범 관련 민원	건축과
112	모기 방역 요청	보건행정과
113	망원역 자전거 거치대 주변의 쓰레기장화에 대한 우려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114	배수구 덮개 소음	치수과
115	상암동 DMC ○○○ 주변 소음공해 신고	환경과
116	거주자 우선주차 사이트 로그인 문제	교통지도과
117	근린상가 용도 불법사용	건축과
118	배달대행 오토바이 야간 소음 신고	교통행정과
119	○○○ 옆 흡연, 담배꽂초 신고	건강증진과, 청소행정과
120	신축건물에 의한 피해	건축과
121	신축 오피스텔 공사소음	건축과
122	집앞 난폭운전 경적소리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23	건축물대장 관련	주택과
124	아현○○○○ 공사 진동 및 소음 측정 요청	환경과
125	신축공사 피해 민원	건축과
126	어린이집 공사 관련 민원	여성가족과
127	도로이용 불편	교통지도과
128	도로 점거 수족관 신고	건설관리과
129	불법주차 신고	교통지도과
130	불법주차 신고	교통지도과
131	철거공사 피해	건축과
132	초본 발급 관련민원	아현동
133	공사피해	건축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134	공사피해	건축과

03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 성과

가. 총 평

-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공공사업 중 공사 18건, 용역 24건, 물품구매 5건 등 총 47건을 감시·평가하여 47건에 대하여 의견표명하였다.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사업 담당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합법성, 예산의 낭비요소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 2021년에도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 및 사후 현장방문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단계별 체계적인 감시·평가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의 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나.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대상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위:건)

계	구 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
47	18	24	5

다.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결과

(단위:건)

계	조치유형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특이사항 없음
47	.	.	47	.

04 청렴계약 감시 · 평가 내역

연번	사업명	부서명	검토결과
1	2019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도로과	의견표명
2	2019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도로과	의견표명
3	와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4	성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5	2020년 불광 · 홍제천 경관개선 및 생태복원사업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6	성미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의견표명
7	2020년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도로과	의견표명
8	2020년 관내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도로과	의견표명
9	월드컵북로▲▲▲ 외 2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	도로과	의견표명
10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1	합정동 골목길 재생 환경개선 공사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2	연남동 골목길 재생 환경개선 공사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3	홍대골목형 퍼레이드	관광과	의견표명
14	마포관광종합가이드북 제작	관광과	의견표명

연번	사업명	부서명	검토결과
15	합정동 골목길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6	망원동 월드컵로〇〇길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기반조성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7	건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수요예측 및 민자 적격성 재조사 전문기관 검증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8	건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계획 전문기관 검토평가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19	마포아트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비 공사	환경과	의견표명
20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화사업 (어린이집 LED 조명시설 설치공사)	환경과	의견표명
21	2019~2020년 전산행정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22	2020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23	마포농수산물시장 전기실 특고압 설비교체 사업	지역경제과	의견표명
24	마포농수산물시장 창호 확장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 사업	지역경제과	의견표명
25	2040 마포도시 발전 마스터 플랜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26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및 아현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27	2020년 마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화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용역	마포중앙 도서관	의견표명

연번	사업명	부서명	검토결과
28	2020년 마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 및 타관반납 도서운반용역	마포중앙 도 서 관	의견표명
29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교통지도과	의견표명
30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도로과	의견표명
31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32	행정전산장비(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매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33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34	마포유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35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36	성산로 가로등 개량공사	도로과	의견표명
37	독막로 가로등 개량공사	도로과	의견표명
38	2019년 마포구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39	네트워크 스위치 및 망연계장비 구매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40	2020~2021년 마포구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41	2020년 마포구 CCTV 관제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연번	사업명	부서명	검토결과
42	2020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도로과	의견표명
43	2020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도로과	의견표명
44	2020년 자전거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교통행정과	의견표명
45	연남동 일대 지하주차장 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용 검토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46	어울마당로 지하공간 개발 사업계획 전문기관 검토평가 용역	도시계획과	의견표명
47	2020년 구민정보화교육 운영 용역	전산정보과	의견표명

05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가. 총 평

- 마포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청탁 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마포구 옴부즈만을 위원으로 구성한 마포구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2020년 청렴자문위원회에서는 마포구의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공유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도 마포구 옴부즈만은 청렴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소통과 공유를 통한 조직내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나. 청렴자문위원회 심의 사항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공개에 관한 사항 검토
-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청렴자문위원회 개최



2020년 제1차 청렴자문위원회
(2020. 1. 21.)



2020년 제2차 청렴자문위원회
(2020. 11. 11.)



III.

2020년 옴부즈만 운영 사례

1. 고충 · 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2. 부서자문 주요 사례
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주요 사례
4. 기타 활동 사례

III. 2020년 옴부즈만 운영사례

01 고충 · 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빌라 입주민 주차장 문제 해결 요청

1. 민원개요

◆◆빌라 주차장 출입구가 ○○시장에 있는 관계로 시장 이용객이 주차장 출입구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주차장 사용을 방해함에 따라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 신청인 : □□□외 40명
- 피신청인 : ○○시장 상인회
- 관련부서 : 지역경제과

2. 조사경위

- 2020. 01. 07. 고충민원 접수
- 2020. 01. 08. 현장 조사 및 현장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면담
- 2020. 01. 09.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 주무관 면담
- 2020. 01. 20.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 및 피신청인 면담
- 2020. 01. 28.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행 협약 체결

3. 판단

- ◎◎시장이 활성화되어 ◆◆빌라 입주민들이 빌라 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가 협소하고 시장 이용객이 많다 보니 주차장 입구의 장애물을 치우더라도 차량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높았고, 2020. 1. 28.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것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결단이라고 보임.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년 1회 지원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상인회장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위 협약 내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행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임.
- 쌍방 원만히 해결한 사항이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지원금으로 인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투명하게 지도·감독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임.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행협약서대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 성실히 이행하고 주무부서에서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동 일대 생활안정을 위한 민원

1. 민원개요

○○동 ▲번지와 ◆◆동 ㅇㅇ-ㅇ 일대의 진입로 협소 및 맹지로 인해 토지주와 주민 간의 법정다툼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계획, 인도확장 및 주택가 불법주차 민원사항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함.

- 신 청 인 : □□□외 64명
- 피신청인 : 마포구 옴부즈만
- 관련부서 :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지도과

2. 조사경위

- 2020. 05. 28. 옴부즈만, 민원인 면담 및 고충민원 접수
- 2020. 06. 04. 옴부즈만, 관계부서 회의
- 2020. 06. 10. 현장방문 조사(옴부즈만, 민원인 10명)
- 2020. 06. 16. 옴부즈만 관계부서 통합회의 개최
(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 2020. 06. 16. 옴부즈만, 민원인(4명) 면담



현장조사

3. 판단

- ◎◎역 일대의 지역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개발요건을 구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
-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주정차 등 생활민원은 해당 주관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히 민원을 해결토록 안내
- 도로로 인한 보행자 통행로 확보와 가로수로 인한 불편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민원 해결방법 강구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역세권인 ○○동 ▲번지 일대의 생활불편 민원은 주민들이 자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발요건 및 방법을 주택과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추진토록 하고, 현 지역상황상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주차는 청소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에 맞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도로이용 불편사항 및 가로수 식재는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도로상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

1. 민원개요

○○동 ▲▲-▲ 일원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공사 설계상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고, 그로인해 조망권과 일조권 등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사전설명과 동의절차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요청

- 신청인 : □□□외 67명
- 피신청인 : 마포구 옴부즈만
- 관련부서 : 도로과
- 협조부서 : 교통행정과, 생활체육과

2. 조사경위

- 2020. 02. 27 : 고충민원 접수(□□□ 외 67명)
- 2020. 03. 05 : 관련부서 회의 및 현장조사
- 2020. 03. 09 : 도로과 담당 주무관 면담
- 2020. 03. 11 : 민원인 면담(4명)
- 2020. 03. 11 : 관련부서 회의(옴부즈만, 도로과, 생활체육과)
- 2020. 03. 18 : 민원인과 합동회의(옴부즈만, 민원인, 도로과 담당팀장, 주무관)
- 2020. 04. : 주관부서와 민원인 간 협의 추진
- 2020. 04. 29 : 추진상황 협의(도로과)

3.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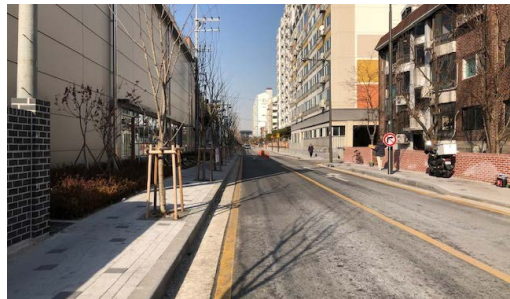
- 본 ○○동 소재 지역은 오랫동안 창고, 일부 시민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 사건 사업은 ○○동 일대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임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과 공사소음 등 피해를 입고 있음
- 인근 주민들이 배드민턴뿐만 아닌 실내 체육관을 원하고 있으므로, 주관부서는 이 사건 사업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복합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하고, 관리동 역시 일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
- 게이트볼장 일부를 공원화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 대표성을 확보한 신청인 대표의 협의안을 주관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향후에도 신청인, 인근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권고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신청인과 주관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며, 공사로 인해 민원 피해 및 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신청인과 소통하고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다.



민원처리 전



민원처리 후

02 부서자문 처리 주요 사례

2019 ○○행사 용역대금 분쟁

1. 민원개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 '2019 ○○행사' 용역계약자 당사자인 (주)■■가 실시한 행사용역 대금이 '사후정산'을 예정한 계약이 아닌 MICE 총액확정계약으로 용역내용의 변경과 관계 없이 총액금액을 지급 요청함.

- 신청인 : (주)■■
- 피신청인 : 문화예술과
-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2. 조사경위

- 2019. 09. 27. : 2019 ○○행사 기획·운영 용역계약 (마포구-주)■■)
- 2019. 11. 1. ~ 11. 3. : 용역시행
- 2019. 11. 27. : (주)■■ 용역결과보고서 제출(마포구 정산자료 요청)
- 2019. 12. 12. : (주)■■에서 '총액확정계약'으로 대금지급 주장하며 민원제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2019. 12. 31. : 용역준공계 제출
- 2020. 01. 8. : 옴부즈만 상담요청(문화예술과)
- 2020. 01. 15. : 옴부즈만 민원합의(주)■■, 문화예술과)

3. 판단

-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 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확정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마이스(MICE)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은 용역의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는 6~8%, 이윤은 5~10% 수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용역계약 체결이후 MICE 업체에게 최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변경에 적용할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변경과업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가기준은 최초의 산출내역을 준용할 수 있어 특정항목의 감소 시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예" 미배치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감액)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과의 관계는 용역업무의 성공적인 과업수행 시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에서 상호 밀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이 필요하나 계약상대자와의 소통부족으로 지방계약법상 계약이행절차의 안내가 민원업체로 하여금 압박과 권한남용으로 비추어 짐
- 2020. 1. 15. 옴부즈만 회의 시 계약당사자의 상호 원만한 대화를 통해 계약 내역서상 미이행한 중요 부분(조명설치)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없이 감액변경' 하기로 협의하고 조속히 변경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본 민원 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2019 ◎◎행사 기획·운영 용역대금 지급' 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민원인과 주관부서 사이에 계약금액을 감액변경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되었으나, 향후 MICE 계약추진 시 '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유권해석(행정안전부)' 과 '마이스(MICE)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발주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후정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이를 고지하여 분쟁을 사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국유지 무단점용 철거 요청

1. 민원개요

도로를 점유한 담장으로 인해 설계대로 건축 준공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점용한 피민원인에게 담장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민원 해결을 요청함.

- 신청인 : □□□
- 피신청인 : ●●●외 2
- 관련부서 : 건설관리과, 건축과

2. 조사경위

- 2020. 03. 민원인이 본인의 변상금 부과부분(2m²)에 대해 사용허가 요청
- 2020. 03. 13. 건설관리과에서 현장 방문하여 ○○동 ▲▲-▲번지 점유사항 확인
- 2020. 03. 27. 건설관리과에서 점용허가 진행사항 확인 시 변상금은 부과하고 있으나 강제철거는 어렵다고 답변함
- 2020. 03. 31. 민원인이 건설관리과에 '피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건설관리과에서 피민원인에게 공문 발송' 요청
- 2020. 04. 01. 고충민원 제출(민원인)
- 2020. 04. 03. 건설관리과, 옴부즈만 부서자문 의뢰
- 2020. 04. 03. 관련부서 회의(옴부즈만, 건설관리과, 건축과)
- 2020. 04. 08. 관련부서 2차 회의(옴부즈만, 민원인, 건설관리과, 건축과)
- 2020. 04. 21. 합동회의 개최(옴부즈만, 민원인, 피민원인, 건설관리과, 건축과)
- 2020. 04. 29. 현장 방문(옴부즈만, 민원인, 피민원인) 면담
- 2020. 05. 12. 관련부서 회의(옴부즈만, 건설관리과, 건축과)
- 2020. 05. 19. 민원인 최종면담(옴부즈만, 민원인, 피민원인)

3. 판단

- ○○동 소재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향후 사용승인에 대비하여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인근 건물의 담장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향후 담장이 철거되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민원인이 담장을 본인 부담으로 철거해 주고 피민원인도 서로 동의한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서면상 합의서가 필요한 상태임.
- 옴부즈만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당사자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향후 담장 철거 시 담장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피민원인이 건설관리과에 점용료를 취소하도록 절차 안내 필요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동 ▲▲-▲ 신축건물과 관련한 담장철거에 대해 민원인과 피민원인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신축공사로 인해 향후 담장철거 시 현재 부과되고 있는 점용료를 확인하여 취소 또는 변경하기 바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시 담장으로 인한 진입로를 사전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동 ▲▲-▲ 보안등 신설 요청 민원

1. 민원개요

○○동 ▲▲-▲ 신축공사로 인해 철거되었던 보안등을 원래 있던 자리에 재설치 해줄 것 요청

- 신청인 : □□□외 25명
- 피신청인 : 도로과
- 관련부서 : 도로과

2. 조사경위

- 2020. 02. 04. 고충민원 제기(도로과 접수)
- 2020. 04. 23. 임시등 철거 후 보안등 1개소 신설(○○동 ▲▲-▲앞)
- 2020. 04. 28. '구민에게드립니다' 민원제기
(○○동 ▲▲-▲ 주변 ◎◎장식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안등 필요 요청)
- 2020. 04. 29. 고충민원(○○동 ▲▲-▲ 앞 보안등 기존 자리에 설치요구)
- 2020. 05. 11. □□□외 3명 민원상담(감사담당관)
- 2020. 05. 12. 주관부서 의견 청취
- 2020. 05. 12. 현장 확인(옴부즈만, 도로과 담당 팀장, 주무관, 민원인)
- 2020. 05. 19. 민원내용 협의(옴부즈만, 도로과 담당 팀장, 주무관)

3.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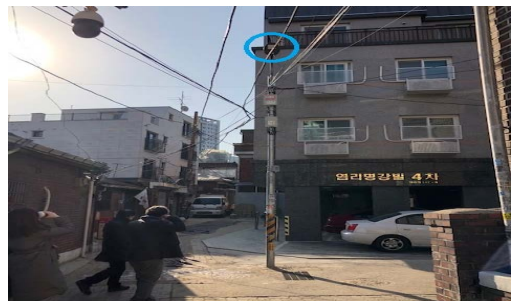
- ○○동 소재 재개발 해제지역의 기존 차량출입이 많지 않았던 주택가 지역에 건물신축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통 등 주민불편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임
-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도로과 의견이 달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현장 확인 결과 기존 자리에는 통신주가 존치되고 있어 새로이 보안등주를 설치하는 것보다 통신주를 이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신청인이 보안등을 재설치 요구한 기존장소는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건물주차장 측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기 철거된 종전 보안등과 같은 위치에 있던 통신주만 존치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은 가능한 상태로, 별도 보안등주를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통신주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통신주를 이용하여 보안등을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민원처리 전



민원처리 후



아파트 상가 내 배달식당 19개 입점 반대

1. 민원개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상가에 배달음식점 19개소가 입점준비를 하고 있어 음식 냄새 및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안전문제와 환풍기 노출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입점 반대 및 영업신고 미수리 할 것을 요구함.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외 211명
- 피신청인 : 주택과, 위생과
- 관련부서 : 주택과, 위생과

2. 조사경위

- 2020. 05. 27. 고충(다수인) 민원 접수(총212명)
- 2020. 05. 28. 위생과 자체 1차 현장조사
- 2020. 05. 29. 위생과 민원답변
- 2020. 06. 15. 위생과에서 민원인 및 관계자 대책회의 및 2차 현장조사
- 2020. 07. 15. 위생과에서 옴부즈만에 민원해결 자문 의뢰
- 2020. 07. 17. 옴부즈만 1차 회의(위생과, 환경과)
- 2020. 07. 21. 마포구 옴부즈만 게시판에 민원접수
(민원번호 316, 상가 환풍기 노출 건으로 보행 불편 및 유해물질 우려)
- 2020. 07. 23. 옴부즈만 현장방문 및 간담회(주택과, 위생과 및 입주자대표)
- 2020. 07. 23. 옴부즈만, 업체 간담회
- 2020. 07. 17. 옴부즈만 게시판 민원접수
(민원번호 318, 아파트 상가 환풍기 노출로 주민 불편 증가)
- 2020. 07. 29. 옴부즈만 2차회의(위생과, 주택과)

3. 판단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외 211명이 제출한 아파트 상가 내 배달식당 19개소 입점반대 민원은 입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업소 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
- 식품위생법상 적법요건을 구비 시 영업신고가 이루어지나 현재 발생된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결 방법을 강구 필요
- 19개 배달 식당에서 1일 출입이 예상되는 오토바이 배달건수가 800여건이 될 경우 아파트 입구를 출입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상가에 설치된 환풍기 노출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입주민들의 보행 불편으로, 공동주택 내 상가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환풍기의 위치 조정과 냄새 등을 상가건물 옥상위로 배출 필요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아파트 지하상가 내 일반음식점 신고는 식품위생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입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음식냄새 제거와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된 탈취기의 이용시간 및 운영방법 등을 최소화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달용 오토바이가 아파트 정문을 출입하는 것보다 상가외부 앞 공간을 활용하도록 상가입주자들과 협의하고, 상가 외부에 설치된 환풍기는 공동관리주택법령에 맞도록 환기구의 설치 위치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민원처리 전



민원처리 후



〇〇동 무허가 건축물 정비 요청

1. 민원개요

〇〇동 소재 무허가 건축물이 수년째 폐가상태로 방치되어 쥐가 들끓고 우범지대화 될 것을 우려하여, 집주인을 설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함.

- 주관부서 : 건축과
- 피신청인 : 도시안전과
- 협조부서 :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2. 조사경위

- 2020. 09. 17. 옴부즈만 고충민원 게시판 민원 접수
- 2020. 09. 22. 옴부즈만, 주관부서 회의(옴부즈만, 도시안전과)
- 2020. 09. 28. 옴부즈만 합동회의(옴부즈만, 도시안전과, 건축과)
- 2020. 10. 07. 민원현장 방문(옴부즈만, 도시안전과, 건축과)
- 2020. 10. 15. 옴부즈만 합동회의(옴부즈만, 세무1과, 도시안전과, 건축과)
- 2020. 10. 21. 옴부즈만 합동회의(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및 민원인 면담

3. 판단

- 민원대상 건물이 폐가상태로 인접한 오솔길 형태의 현황도로 통행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됨
-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공공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음
-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거주하였던 무허가 건물의(약63㎡) 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소유자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집행이 곤란함
-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정비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도록 촉구조치하고 소유자들이 개발에 대한 요청시 적극 상담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민원대상 폐가건물 인근 도로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통행주민들의 혐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가소재 토지주에게 자체정비토록 촉구하고, 도로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03 청렴계약 감시 · 평가 주요 사례

2019년 보도블럭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1. 민원개요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신설 및 확장, 턱낮춤 ·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과 노후보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

- 기 간 : 2019. 3. ~ 2019. 12.
- 규 모 : 관내 보도블럭 유지보수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북로, 성미산로 일대
- 사 업 비 : 금678,000천원
- 계 약 일 : 2019. 3. 20. (착공일 2019. 3. 21.)
- 발주방식 : 제한입찰
- 주요현황(관내 도로 현황)

구분	노선수	도로연장(km)	보도연장(km)	비고
계	799	197.6	132.3	보도(양측)
시도	22	46.8	80.2	
구도	777	150.8	52.1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 과도한 설계 변경을 지양할 것
- 구간이 추가되거나 다를 경우 별도의 발주가 필요하면 가능한 한 단일 공사로 실시하고 과도한 설계 변경을 지양할 것
-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점을 감안하여 불신이 없도록 주의할 것

성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 사업개요

성산근린공원에 노후되고 부족한 공원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

- 기 간 : 2020. 2. ~ 2020. 12.
- 규 모 : 약 100,000m²
- 사 업 비 : 금1,950,000천원
- 계 약 일 : 2020. 4. 8. (착수일 2020. 4. 9.)
- 발주방식 : 제한입찰
- 위 치 : 성산동 산11-1 등 38필지



위치도



정비대상(수목갱신 및 시설정비)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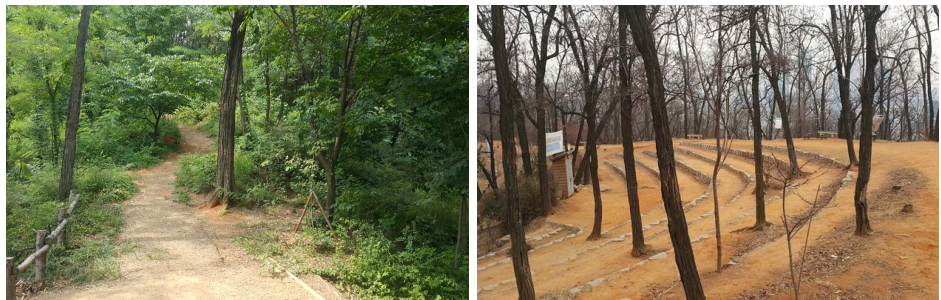
사전에 적절한 공기를 산정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것

성미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1. 사업개요

어르신,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이용하도록 성미산 숲길을 완경사로 조성하는 사업

- 기 간 : 2020. 1. ~ 2021. 2.
- 규 모 : 약 2.0km
- 위 치 : 성산동 산 11-73 등
- 사업비 : 1,000,000천원
- 계약일 : 2020. 11. 26. (착수일 2020. 11. 27.)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현황사진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사생활 침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1. 사업개요

합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정채되어 있는 존치정비구역은 개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로서 필요성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검토 등을 통해 촉진계획을 변경 수립

- 사업기간 : 2020. 3. ~ 2021. 2.
- 사업규모 : 합정동 등 일대
- 사업비 : 금200,000천원
- 계약일 : 2020. 4. 3. (착수일 2020. 4. 3.)
- 발주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사항

구 분	노선수
1. 기초조사 분석방안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 대상지 일대 현황분석 및 향후 전망
2. 기본구상안 설정	· 주변지역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한 기본구상안 – 합정역 역세권 관리방안 검토 – 가로환경 정비에 위한 유연한 계획 검토 ·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3. 촉진계획(지구단위 계획) 수립 내용	· 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의 적정성 · 부문별 계획수립의 적정성
4. 과업실현방안 및 과업수행계획	· 단계별(단 · 중 · 장기) 계획실현 방안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 주민수렴 및 실현 방안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청취할 것

합정동 골목길 재생 환경개선 공사

1. 사업개요

쾌적한 골목길 조성을 위하여 골목길 시설물 정비 및 도로포장, 수목식재 등 환경 개선 공사 수행

- 기 간 : 2019. 12. ~ 2020. 12.
- 규 모 : 연장 1,600m
- 사 업 비 : 금267,280천원
- 계 약 일 : 2019. 12. 3. (착수일 2019. 12. 4.)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
- 위 치 : 토정로4길 일대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

홍대 골목형 퍼레이드

1. 사업개요

관광객이 즐겨찾는 홍대지역에서 국악한마당,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 전통의상 포토존 등 매회 특색있는 콘셉트를 기획, 공연하는 사업

- 기 간 : 2020. 5. ~ 2020. 11.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행사 취소됨
- 규 모 : 소규모 거리 퍼레이드 개최
- 사 업 비 : 금98,000천원
- 장 소 : 어울마당로 65 상상마당 앞
- 발주방식 : 제한입찰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2020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용역

1. 사업개요

신속한 기술지원과 장애 대응체계 정립 등 안정적인 웹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

- 기 간 : 2020. 1. ~ 2020. 12.
-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부서 웹서비스
20개	6식	9식	2식

- 사 업 비 : 금248,263천원
- 계 약 일 : 2019. 12. 11. (착수일 2020. 1. 1.)
- 발주방식 : 제한입찰
- 주요내용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한 홈페이지 업데이트 지속 추진

2020년 마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화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용역

1. 사업개요

마포구립도서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서관리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

- 기 간 : 2020. 1. ~ 2020. 12.
- 유지보수 대상
 - 마포중앙도서관 도서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인프라
 - 마포구립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시스템
 - 마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정보 시스템
- 사 업 비 : 금210,015천원
- 계 약 일 : 2019. 12. 9. (착수일 2020. 1. 1.)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도서관 현황

구분	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영어도서관
도서관수	15개소	4개소	9개소	2개소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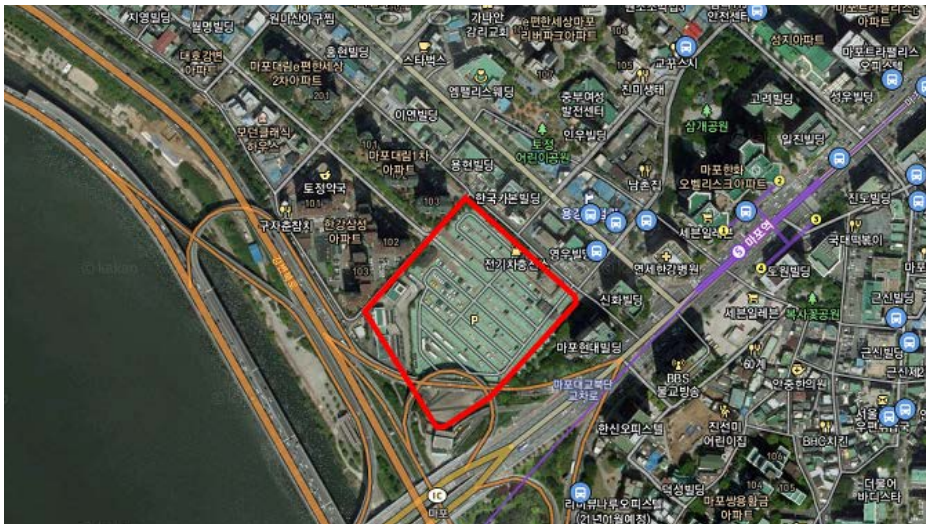
마포구립도서관 공공앱 변경 사항을 사전에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

마포유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

1. 사업개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용역 수행

- 기 간 : 2020. 3. ~ 2020. 10.
- 규 모 : 유수지, 주차장, 광장
- 사 업 비 : 금145,000천원
- 계 약 일 : 2020. 4. 17. (착수일 2020. 4. 17.)
- 발주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위 치 : 마포대로1길 9 일대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유수지 및 문화공연 시설과 관련된 종합적 검토 필요

2019 마포구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

1. 사업개요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포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 기 간 : 2019. 1. ~ 2020. 12.
- 규 모 : 구청, 주민센터 등 37개소 및 마포중앙도서관 정보통신 시스템
- 사 업 비 : 금661,862천원
- 계 약 일 : 2018. 12. 20. (착수일 2019. 1. 1.)
- 계약방식 : 일반 공개경쟁입찰
-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포설도



2. 평가결과 : 의견표명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방안 마련 추진

04 기타 활동 사례

■ 마포구 옴부즈만 배수진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수상

- 일 시 : 2020. 2. 27.(목)
- 내 용 :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국민권익 증진 공로자 표창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2기 마포구 옴부즈만 재위촉

- 일 시 : 2020. 12. 10.(목)
- 장 소 : 마포구 옴부즈만실
- 내 용 : 제2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IV.

참고 자료

1. 보도 자료
2.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IV. 참고 자료

01 보도자료



매일일보 (2020. 3. 20.)

**마포구 음부즈만, 구민 권익 증진 역할 '톡톡'...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배수진 변호사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 감사담당관 한만석 주무관, '대통령 표창'**



지난 5일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고충민원 현장을 둘러보는 마포구 음부즈만.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해의 민원서비스 분야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등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먼저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배수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지난 한 해 동안의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고충민원 해소와 청렴계약 감시·평가 성과를 거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구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82건의 민원을 처리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충민원 48건을 접수해 그 중 19건을 직접 조사하며 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고충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인 민원의 조사, 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물론 개인 분야에서 마포구 감사담당관 한만석 주무관이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기관 표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구민들이 도움받을 수

헤럴드경제 (2020. 3. 20.)

마포구 옴부즈만, 구민 권익 증진 역할 ‘특독’ 공적 인정...대통령 표창 등 수상 영예



지난 5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마포구 옴부즈만이 관련부서와 함께 통합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의 민원서비스 분야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등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배수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지난 한 해 동안의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고충민원 해소와 청렴계약 감시·평가 성과를 거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구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82건의 민원을 처리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충민원 48건을 접수해 그 중 19건을 직접 조사하며 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고충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인 민원의 조사, 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것은 물론 개인 분야에서 마포구 감사담당관 한만석 주무관이 적극적 민원 해결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기관 표창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구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그들의 고충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20. 3. 20.)

마포구 옴부즈만, 구민 권익 증진 역할 ‘톡톡’ ... 표창 수상으로 이어져

서울 마포구는 지난해의 민원서비스 분야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등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배수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지난 한 해 동안의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고충민원 해소와 청렴계약 감시·평가 성과를 거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구정을 감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됐으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82건의 민원을 처리해왔다. 지난해는 고충민원 48건을 접수해 그 중 19건을 직접 조사하며 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고충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매주 열리는 정례회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고질적인 민원의 조사, 조정 및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며 지속적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02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961호, 2014. 4.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만이 꺾어진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6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이하 "감시·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641호, 2014. 10. 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서약)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9조(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제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수당지급)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ombudsman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11조(공인) ① ombudsman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ombudsman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 ⑤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중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시행일 : 2022. 1. 13.] 제72조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 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7806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 행 일 2021년 2월

발 행 인 마포구 옴부즈만

주 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 화 02-3153-8183

홈페이지 www.mapo.go.kr

2020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T 02.3153,8114 F 02. 3153. 8998 H www.mapo.go.kr